


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위치 공개 방법의 예시

※ 현장 시공단계에서 변경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(계약자)에게 변경내용을 제공하여야 함

게시구분	게시방법	예시	
건본주택	모델 하우스	① 단지 모형도에 "이동통신중계설비" 표지판 부착 	
	② 건본주택 내 "상호협의결과서" 게시		
	사이버 건본 주택/ 인터넷 홈페이지	① 단지 조감도에 중계설비 설치 동 표시	
	② 홈페이지 내 상호협의결과서 제공		
	③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 게시		
	입주자모집 공고문	● "유의사항" 등에 협의결과에 따른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 위치(해당 동 등) 를 빠짐없이 기술 할 것 •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69조의2 및 「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의2 등에 의거,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. •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,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. •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-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: 101동, 104동, 108동 옥상층 및 화단 등 지상 일부 구간, 지하주차장 102동 헬룸, 105동 동통신실	